



국 세 청



수신 교육부장관(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)
(경유)
제목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

1.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, 귀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한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2.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, 2021.3.9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, 2021.3.9.

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(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)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국 세 청



국세조사관 **박선희** 팀장 **이광의** 서기관 **윤성호** 전결 2021. 3. 18.
협조자 팀장 **문병갑**
시행 법령해석과-936 (2021. 3. 18.) 접수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- (2021. 3. 18.)
1706
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 / <http://www.nts.go.kr>
전화번호 044 204 3123 팩스번호 050 31101504 / pink3275@nts.go.kr / 비공개